

"건축사 바로 세우기"  
"설계업무대가 정상화하기"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965. 10. 23 설립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참 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장**  
제 목 **서울시 「건설안전 기본지침」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제25조에 제2항 의해 건축물의 건축공사시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감리자의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의2에 의해 우리 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업무는 대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향상, 위법방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해 안전관리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3. 우리회에서는 해당 감리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2015년 7월 10일 개정된 「건설안전 기본지침」을 감리자에게 교육 및 배부하여 건축공사현장의 재해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해당 자료를 우리회에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담 당(간) 공바름 팀 장 차재엽 사무차장 구철희 부회장 김태문 회 장 김준식

(공람)부회장 김재록 (공람)부회장 최찬수

협 조 자

시 행 건축 2250 - 5 ( 2019. 1. 2. ) 접 수

우)137-87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7층

전 화 02-581-5715 전 송 02-523-2284 www.sira.or.kr